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91
----------	------

제출일자 : 2020. 12. 4

제 출 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2021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주요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만족도를 높이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최근 공동주택 입주 및 산업단지 조성 완료로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 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및 이륜자동차 무단방치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가 급증하여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담팀으로 변경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나. 팀장의 대외 공식적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함으로 관련 조례 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참조

(2) 성별/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4) 입법예고(2020. 11. 10. ~ 11. 30.) 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주민복지국)제2항제3호 중 “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을 “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로 하고 제2항제7호 중 “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을 “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교통특사경”으로 한다.

제8조(건설도시국)제2항제7호 중 “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도로명주소”를 “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주소정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제4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한다.
-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간사)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고 제10조(제안설명)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 ④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제7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변경한다.

- ⑤ 대구광역시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제2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직무)제3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제3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간사) 중 “기획담당” 을 “기획팀장” 으로 변경하고 제8조(분과 위원회)제3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구성 및 운영)제2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간사)제2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제10호, 제1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제10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3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⑮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제6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①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제3항 중 “식품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제5조(위원회 구성)제6항 중 “위생행정담당”을 “위생행정담당 팀장”으로 변경한다.
- ①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 ①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구성)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한다.
- ①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제3항 중 “담당업무 부서장 또는 담당”을 “담당업무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한다.
- ②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제1항제2호 중 “재난업무담당”을 “재난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한다.
- ②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제1항제2호 중 “옥외광고담당”을 “옥외광고담당 팀장”으로 변경한다.
- ②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구성)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고 제5조(운영위원회)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 ②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회계공무원)제1항제2호 중 “체육진흥담당”을 “체육진흥담당 팀장”으로 변경한다.

- ②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②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구성 등)제3항 중 “업무담당” 을 “업무담당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②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제3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사무직원중 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임용권 나. 호봉획정 및 승급 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같은법 제32조
	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읍 ·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출장승인 라. 겸직근무 마. 병 가 바. 공 가 사. 특별휴가 아. 겸직허가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27조
	2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의 권한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3	읍면개발자문위원 위촉	•군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
징 수 과	1	지방세징수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2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가. 이륜차 등록에 관한 취득세, 등록면허 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발급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30조
회 계 과	1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처분	•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같은조례 제17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과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청소위생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라. 생활쓰레기 불법 투방기 지도·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공원녹지과	1	산림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나. 불농기 허가 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복지정책과	1	기초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 라. 수급권 자격관리 마. 이의신청 등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나.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 상실· 변경 요구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다. 의료급여증의 자격확인· 정정· 증회수등 라.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수합 제출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가. 수급자의 관리 나. 급여의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희망지원과	1	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진단 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 다.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라.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 마.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 등 바. 장애등급의 조정 사. 장애상태의 확인 아. 등록중의 반환명령 자.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차.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자에 대한 배려 카. 장애인 보장구 신청서 수합 및 실태 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교 통 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2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노상방치차량 조사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공사, 굴착, 건축 수반 허가 제외)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도 시 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안전방재과	1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가.

나.

2. 비용 발생 요인

3. 관련조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국 △△과장 △△ 팀장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10호 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

[illegible]

※ 조정카드는 1일 1매를 원칙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11호 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illegible]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 심사대상자

연번	표창대상자			공적개요	심사결과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 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제11조(공적심사) 및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에 따라 위 심사결과와 같이 표창대상자로 선정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의원) (인)

위원(의원) (인)

위원(사무국장) (인)

위원(전문위원)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복지국) ① (생 략)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 략) 3. <u>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 복지·드림스타트·아동</u> 에 관한 사항 7. <u>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u> 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 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u> ----- 7. <u>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교통특사경</u> -----
제8조(건설도시국) ① (생 략)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 략) 8. <u>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 정보·도로명주소</u> 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도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7. (현행과 같음) 8. <u>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 정보·주소정보</u> -----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